

---

# 2015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계획

---

2015. 5.



기 상 청

# 목 차

## I. 개요

- ① 배경 및 목적 ..... 1
- ② 평가대상 및 기간 ..... 2
- ③ 평가체계 ..... 2

## II. 세부 평가내용

- ① 평가분야 및 부분별 지표 ..... 3
- ② 평가단 구성 ..... 4
- ③ 설문조사 방법 ..... 5
- ④ 계량지표 수집 및 점수화 ..... 7
- ⑤ 개인정보관리 ..... 10
- ⑥ 평가결과 공개·활용 ..... 11

## III. 향후 추진일정 ..... 11

## IV. 행정사항 ..... 12

- 첨부 1. 내부 설문평가 및 계량평가 지표 ..... 13
- 첨부 2.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 14
- 첨부 3. 계량평가 지표관련 제출자료 증명서 발급 방법 ..... 15
- 첨부 4.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서식 ..... 16

# 2015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계획(안)

## < 근거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시책평가 기본계획('15.3.6. 권익위)
- ❖ 2015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15.4.27. 기상청)
  - 청렴의식·문화 개선,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노력 강화

※ 과년도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현황

년도	주관기관	진단내용	진단결과(10점 만점)
2012	권익위	실·국장, 소속기관장 16명의 청렴도 평가	종합점수 9.66점
2013	기상청	과장급 63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	종합점수 9.19점
2014	권익위	본청 고위직 6개 직위의 부패위험성 진단	종합점수 5.50점

## I 평가 개요

### ① 배경 및 목적

-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성 진단 자율 시행 통보(권익위, 3.31)
  - ※ 진단결과(진단기간, 방법, 대상, 결과 등) 권익위 통보
- '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권익위) 기상청은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으로 평가
  - ※ '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기상청) : 외부평가 8.33 / 내부평가 7.57
-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직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청렴분위기 조성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 ② 평가대상 및 기간

### 가. 평가대상

- 본청 실·국장, 1차 소속기관장, 산하기관장 등 총 19명(공문 시행일 기준)

구 분	평가대상	대상인원
본 청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관리관,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6
1차 소속기관	국립기상과학원장, 수도권기상청장, 부산지방기상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강원지방기상청장, 대전지방기상청장, 제주지방기상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항공기상청장	10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APEC 기후센터 소장,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3
계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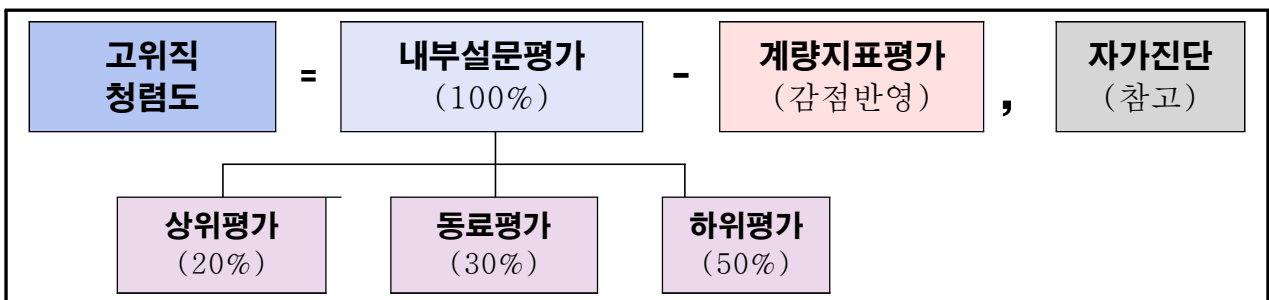
※ 제외 : 청·차장, 감사담당관

### 나. 평가시기 및 대상기간

- 평가시기(\*잠정) : '15. 6. 8 ~ 6.12
- 평가대상기간 : '15.4.30 기준 최근 1년간('14.5.1. ~ '15.4.30)

## ③ 평가체계

### 가. 평가체계도



- 설문평가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하여 계량지표평가 감점 반영
-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관리에 참고

### 나. 평가기관(수행방법) : 부패위험성 전문진단기관에 위탁 수행(E-mail)

### 〈 기본 방향 〉

- ❖ 기관 자율적 의지에 따라 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고위공직자(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청렴도 검증 강화
- ❖ 객관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피평가자의 청렴수준의 간접적 진단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모형」(국민권익위원회) 참고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측정자료의 코드화로 개인별 자료 관리 철저
  - 평가자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가 엄격히 제한

## 1 평가 분야 및 부분별 지표

### 가. 평가 분야

-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직무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및 법규 준수여부(준법성) 등을 다각도로 측정

평가분야		측정 사항
내부 설문	직무청렴성	공정한 직무수행,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이득의 수수, 관리직으로서의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사회 지도층으로서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계량 지표	준법성	교통법규 위반 등 법규준수 여부

### 나. 부분별 평가지표

- 내부 설문평가 지표 : 19개 설문항목
  - 직무 위법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업무책임 회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 외유성 출장 등(「첨부 1」 참조)
- 계량평가 지표 : 4개 설문항목
  -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준법성 관련 지표는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 하여 감점 반영(「첨부 1」 참조)

-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 적용
-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첨부 2」. 참조)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내부 설문평가 지표 19개 항목과 동일
  - 내부 설문평가 지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 결과와 내부 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비교하여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요소로 활용

## 2 평가단 구성

### 가. 구성 방향

- 피평가자별로 업무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내부평가단만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평가의 신뢰성 제고
  - ※ 피평가자의 전국적 분포로 외부평가단의 객관적 구성의 어려움 고려
- 내부평가단은 상위평가단, 동료평가단, 하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별 그룹으로 구분을 원칙

### 나. 내부평가단 구성 및 가중치

가중치	평가단 구성 기준	인원
상위평가단 (20%)	○ 본청 청·차장, 산하기관 감독 국장(산하기관장 평가시)	2명
동료평가단 (30%)	○ 소속 실·국, 1차 소속기관장, 산하기관장	6~8명
하위평가단 (50%)	○ 소속 부서원 및 공통(주무) 부서 근무 직원	20명

- **상위평가단** : 피평가자의 소속 상급자 및 직무 연관 상급자로 구성
  - 피평가자를 잘 아는 경우(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속 상관이 아닌 경우에도 평가단에 포함
  - ※ 상위평가단은 기관내 3개월 미만 근무시에도 평가자로 구성 가능
- **동료평가단**: 소속 실·국, 소속기관 및 업무 연관성이 있는 타 부서 동료로 구성
- **하위평가단** : 소속 부서 직원, 공통(주무)부서 직원 등으로 구성
  - 피평가자와 현재 부서원 및 해당 실·국, 1차 소속기관의 공통(주무) 부서의 직원, 동일 부서(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포함하여 선정

### ③ 설문조사 방법

#### 가. 내부평가단 평가

- 내부평가단에 의한 평가는 **온라인(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실시
  - 조사의 성격상 전화조사, 설문지 배부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 ※ 조사시스템 접속은 본인 고유의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
- 평가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평가자는 이메일과 링크된 Web-site(조사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
- 온라인 조사는 외부 전문조사기관의 설문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응답내용의 외부유출이 근원적으로 차단

#### ■ 평가자에 대한 비밀보장

- 자료 처리 및 집계과정에서도 부서, 성명 등 모든 정보는 **코드화**되어 처리
- 응답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하신 내용에 관한 개별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등에 의해 외부에 제공되거나 공개되지 않음

## 나. 설문 구성 및 척도 등

### ○ 설문의 구성

- 설문은 관리직의 청렴수준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 선택지에서 평가대상의 청렴 수준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

### ○ 설문 척도

-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되도록 각 질문문항 아래에 지표의 정의·개념, 포괄 범위, 구체적 예시, 평가 유의점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
- 개인별 청렴도 평가는 **10점 척도**를 사용

#### <설문 척도(예시)>

선택지	항상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며 실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10 <input type="checkbox"/> 9 <input type="checkbox"/> 8
	대부분의 경우에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업무지시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7 <input type="checkbox"/> 6 <input type="checkbox"/> 5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3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실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1

### ○ 평가결과 집계

- 평가항목별 점수집계 후 평가항목과 평가부분별로 가중치를 비례 적용하되, 집계에 앞서 응답분포를 확인하여 극단적 데이터는 집계에서 제외



**<참고> 극단적 데이터 제외 기준**

- 특정한 평가자의 응답결과가 '극단적 데이터'로 판단될 경우, 해당 평가자가 응답한 모든 항목의 평가점수를 집계에서 제외
- ※  $\{(\text{피평가자 A의 평균점수}) - (\text{표준편차} \times 2)\}$  보다 낮은 평가자의 점수 제외
- 예를 들어, 평균점수가 84.5점이고 표준편차가 15.3점이면,  $\{84.5 - (15.3 \times 2)\} = 53.9$ 점보다 낮은 평가자의 평가 데이터는 모두 제외
- ※ 이때, 항목별 평균·표준편차가 아니라 전체 평가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임에 유의

**4] 계량지표 수집 및 점수화**

계량지표(4개) : ①교통법규 위반 여부 ②행동강령 위반 징계를 받은 경험  
③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④ 재산불성실 신고

**가. 관련자료 수집**

○ 교통법규 위반실적

- 피평가자로부터 제출된 **관련 증명서**(평가대상자가 필요시 자료봉투에 넣고 밀봉)를 수집
- ※ 관련 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sup>1)</sup> 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피평가자는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감사담당관실에 제출  
(증명서 발급 방법 : 「첨부3」 참조)
- ※ 각종 증명서는 온라인상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

1) 평가대상기간은 '14. 5. 1 ~ '15. 4. 30

○ 복무, 행동강령위반 징계 등 처분자료

- 감사관실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징계관련대장' 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통보서'를 수집
- 평가대상기간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반영
  - ※ 평가대상자로부터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첨부4」 참조)를 반드시 징구
  - ※ 징계는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만 감점 적용하며, '부패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를 참고할 것

○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청렴교육 이수 실적, 청렴사적지 방문,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기고문 작성, 자원봉사 실적 등을 폭넓게 인정
  - ※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원, 청렴교육관 등)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모두 인정
- 피평가자가 개인적으로 이수한 실적이나 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근거자료를 제출

<계량지표 실적자료 수집방법>

지표	자료형태	자료출처	제출방법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 심사결과	감사담당관실	피평가자가 감사관실에 자료활용동의서 제출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
행동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징계처분자료	징계처분 실적	감사담당관실	피평가자가 감사관실에 자료활용동의서 제출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청렴교육 이수, 청렴관련 강연·저서 발간, 청렴 사적지 방문, 자원봉사 실적 등	개인별 현황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실적 자료 : 출장 신청서, 사진, 도서, 기타 확인서 등</li> </ul>

**<참고>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교통법규 위반건수가 본인만의 위반건수인지 여부**

-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되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본인의 위반 건수만이 기록된 것으로서 청렴도(준법성) 평가지표로서 이용 가능

\* 무인카메라 단속, 주차위반 등은 운전자와 관계없이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 나. 계량지표 점수화

- 평가대상자별 계량지표는 위반 유형별, 위반 빈도(건수)별로 점수화

● 피평가자 A의 감점 =  $\sum$  (A의 각 계량지표 위반점수)

- 단, 일부 계량지표가 전체 평가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감점폭(표준편차 × 2.5) 설정

- 계량지표는 중복 감점 처리 가능

-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법규 위반실적'과 '징계처분실적'에서 중복하여 감점 적용

- 계량지표 점수는 청렴도 종합 점수에서 감점 반영

● 청렴도 = 설문평가점수(내부) - 계량지표 감점

### <계량지표 점수화 산식>

계량지표	점수화 측정요소	산 식
재산신고 심사결과	재산신고 심사기준에 따른 조치 사항 ※ 재산심사결과: 정정조치,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징계요청	위반점수 = $\sum$ (재산심사 조치사항) • 경고 및 시정조치 건당 0.1점, 징계 조치 0.3점
교통법규 위반실적	교통법규 위반 건수 및 벌점 ※ 벌점 : 운전자 제재를 위해 범칙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점수	위반점수 = $\sum$ (위반건수, 벌점) • 위반 건수당 0.05점 • 벌점 15점 이하(0.05점), 16~60점 이하(0.1점), 60점 초과(0.2점)
징계처분실적 (행동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한징계만 해당)	징계처분 유형 및 빈도 ※ 처분유형 : 주의·경고, 경징계(감봉 이하), 중징계(정직 이상)	위반점수 = $\sum$ (처분유형별 위반건수) • 주의·경고 건당 0.2점, 경징계 건당 0.5점, 중징계 건당 1.0점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평가대상기간 중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이 1회 이상 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중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2점 감점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음주운전, 뺑소니, 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사항만 반영(「첨부 2」 참조)

**<계량지표 점수 산정 예시 >**

- ☞ 피평가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내부·외부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0.10점이고 A 공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 1건에 벌점 30점, 행동강령 위반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 ⇒ 전체 피평가자 10명의 감점 적용 전 종합점수 표준편차가 0.10점이므로 최대 감점폭은  $0.10 \times 2.5 = 0.25$ 점
- ⇒ 계량지표 위반점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감점 0.15점(건수에 따른 감점 0.05점 + 벌점에 따른 감점 0.1점)과 징계에 따른 감점 0.20점을 합친 **0.35점**임
- ⇒ 산식에 의해서는 0.35점을 감점하여야 하나, 최대 감점폭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설문점수에서 **0.25점을 감점**

## 5 개인정보관리

###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측정자료의 코드화

- 자료 처리 및 집계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평가대상자 실명은 모두 코드화하여 처리
- 코드화 방법 : 평가대상자명을 아래 ‘코드화 예시’에 따라 기관내 미리 정해진 코드로서 표기
- 개인식별 코드표는 평가담당자만 소지(암호 설정)

**< 코드화 예시 >**

- 000 과장 ⇒ A, 또는 05 등 기호나 숫자로 코드화

※ 일련번호는 직제표상의 직위순이 아닌 무작위로 부여(피평가자 노출 방지)

### 나. 개인별 자료의 관리 철저

- 개인별 자료 취급 및 관리는 평가관련 최소 인원이 담당
- 평가 완료 후 수집된 개인별 데이터는 파쇄 등 즉시 폐기 조치
- ※ 평가자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는 공개를 엄격히 제한

## 6 평가결과 공개·활용

### 평가결과 공개범위 및 활용의 3원칙 준수

① 응답자 추적 불가능 ② 개인별 평가점수는 청·차장과 피평가자 본인에게만 제공 ③ 통계치 분석을 통해 향후 업무의 시사점 발굴

#### ○ 청·차장 및 피평가자 본인에게만 제공

- 기관장에게는 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피평가자에게는 평가요소별 기관 평균과 비교하여 자가진단을 통한 취약분야를 자율관리토록 유도

#### ○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의 평가항목별 점수, 평가단별 점수 등을 비교하여 부패취약요인, 취약분야 분석에 활용

#### ○ 평가 결과 개요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 13년도 반부패 경쟁력 기관평가에 반영

## III 향후 추진일정

- '15. 5.15 진단계획 수립 및 통보
- '15. 5.18 ~ 5.10 부패위험성 진단 내부평가단 명단 조사·작성
- '13. 5.19 ~ 6.30 외부 전문기관 위탁계약 체결
- '15. 5.31 고위공직자 감점 계량지표 관련 자료 제출
- '15. 6. 8 ~ 6.12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15. 7. 1 결과분석·환류, 결과 통보(권익위)

- 피평가자께서는 계량지표 평가를 위한 자료를 '15.5.29(금)까지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 「첨부 3」 참조
    -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 「첨부 4」 양식 참조
  
- 평가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피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
  - 이의가 제기될 경우, 내부적으로 평가과정, 자료처리 등 전반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고 결과통보, 통계적 오류가 있을 경우 시정
  
- 평가관련 사항 권익위 제출
  - 평가 실시 후 평가개요, 평가결과 등을 위원회로 제출

[첨부 1] 내부 설문평가 및 계량평가 지표

□ 개인별 청렴도 평가지표 및 가중치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1-1	직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7.5)	
		1-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6.5)	
		1-3	학연·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1-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1-5	업무책임 회피·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1-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1-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1-8	직무관련정보 사적이용(5.5)	
		1-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목적외 사용(6.0)	
		1-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외 사용(4.5)	
		1-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2-1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2-2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2-3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2-4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참고문항	-	<b>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b>	점수 미반영	

□ 계량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사항		비고
감점지표	3-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뺑소니 등)	
	3-2	복무, 행동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징계	
	3-3	공직자재산등록법에 의한 재산불성실 신고	재산신고 대상자
	3-4	청렴교육 이수 또는 반부패 활동 실적	

[첨부 2]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기준표

□ 법령 위반

순번	위반사항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음주운전		100	제44조제1항	●
2	속도위반	60km/h 초과	60	제17조제3항	●
		40km/h ~ 60km/h	30	제17조제3항	●
3	공동위험행위로 인한 형사입건		40	제46조제1항	●
4	즉결심판 불응(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		40	제138조, 제165조	●
5	갓길통행		30	제60조제1항	●
6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30	제61조제2항	●
		일반도로	10	제15조제3항	●
7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또는 경찰공무원 질문에 불응		30	제92조제2항	●

□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

순번	구분	벌점	적용법조항 (도로교통법)	반영여부
1	물적사고 발생 후 도주	15	제54조제1항	●
2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3시간내 자진신고	30		●
3	교통사고 사상자 구호조치 불이행 후 48시간내 자진신고	60		●

※ 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으로 인한 벌점 : 반영하지 않음



[첨부 3] 계량평가 지표관련 제출자료 증명서 발급 방법

평가 지표	증명서 명칭	자료내용	발급처	발급방법
교통 법규 위반 자료	'운전경력증명서'	교통법규 위반건수 ※ 경찰에 단속된 <b>운전자의 위반 건수</b> 로서, 차주에 부과되는 속도, 신호위반 등 (과태료)은 제외됨	경찰서	- 범칙금액은 기재 안됨 - 기관 방문시 : 발급료 1,000원 - 온라인 : 무료 발급 ※ 민원24( <a href="http://www.minwon.go.kr">www.minwon.go.kr</a> )

※ 운전경력증명서는 평가대상기간('12. 5. 1 ~ '13. 4. 30)중의 위반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평가기준일/'15.5.1 전후 7일 유효)

※ Window7인 경우 증명서 프린트시 유의사항

pc 바탕화면 하단 왼쪽 「시작」 (클릭) → 「모든프로그램」 (클릭) → linternet Explore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클릭) →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클릭) → 「민원 24」 로그인하여 프린트 실행

# 자료제출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평가부서에 제출·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 및 활용자료명(해당되는 곳에 ○표) :

행동강령위반 또는 징계 등 처분자료	
교통법규 위반자료	운전경력증명서
재산불성실 신고자료	

2015. . .

기관명 :

직 위 :

성명 :

서명